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97회 제1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6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 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. 6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서민우 의원 등 6명
- 발의일자: 2023. 5. 26.(금)
- 회부일자: 2023. 5. 26.(금)
- 검토기간: 2023. 5. 30.(화) ~ 6. 5.(월)

2. 개정이유

-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, 올바른 성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, 소속감 고취를 위해 문화행사를 추진하고,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“사회 소속감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행사” 신설 (안 제6조제1항제7호)
- 나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“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사업” 신설 (안 제6조제1항제8호)
- 다.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7조제3항)

4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소속감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,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학업중단학생은 전국적으로 2019년 33,342명에서 2022년 34,255명으로 913명(2.74%) 증가하였고, 특히 같은 시기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14,969명에서 15,536명으로 567명(3.76%), 대구는 33명(4.91%) 증가함.

학업중단학생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2019		2020		2021		2022	
	총계	고등학교	총계	고등학교	총계	고등학교	총계	고등학교
전국	33,342	14,969	20,467	7,903	26,984	12,014	34,255	15,536
대구	1,247	672	722	355	1,076	578	1,247	705

- 여성가족부(2015)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협소해짐에 따라 사회정체성 위기를 겪고,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, 올바른 성장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함.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 등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고, 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으로,
-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정체성 및 소속감 확립을 돕고,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,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-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배치는 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른 [별표1] 제4호에서 인력기준으로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법 제8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
-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,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3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(상담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, 진로상담,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조(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·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·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
2. 사업계획서
3. 시설 명세서
4. 전문인력 보유 현황

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